

## 일반직(행정) 채용 공고

(재)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는 일반직(행정)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1년 7월 12일

(재)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



### 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채용등급	인 원	채용기간	직무내용
일반직 (행정)	9급	1명	- 2년(1년 단위계약) - 2년 차 계약 종료 1개월 전 인사위원회에서 정년보장 여부 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일반행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문서접수, 직인관리</li><li>- 보수계산 및 지급</li><li>- 세무관련 업무</li></ul></li><li>○ 회계 및 전산관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회계장부 작성 및 관리</li><li>- 회계프로그램 운영</li><li>- 결산서 작성</li><li>- 전자결재시스템 관리</li></ul></li><li>○ 계약·지출·수입·재산관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계약 체결 및 관리</li><li>- 지출수입증빙서 작성</li><li>- 물품관리</li></ul></li><li>○ 이사회 개최 지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이사회 심의 안건 자료작성 지원</li><li>- 법인 등기 변경</li><li>- 제규정집 개정본 편집</li></ul></li></ul>

- \* 1) 원서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할 예정이며,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2)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의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2. 응시 자격 요건

### 【필수요건】

-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인사규정 제15조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인사규정 제15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3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
4.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
5. 이전 직장에서 채용 및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

#### -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국가공무원법 제 33조
   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
  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
  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
  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
  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
2.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 · 제3항, 제36조제2항, 제48조제4항 · 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
  - 제22조제1항

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#### · 제31조제7항

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(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,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

#### · 제35조제2항 · 제3항

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(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감사(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, 그 공기업·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, 상임이사(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계을리한 경우 기관장,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·요구할 수 있고, 그 공기업·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## · 제36조제2항

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, 상임이사(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계을리한 경우 기관장,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·요구할 수 있고, 그 공기업·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## · 제48조제4항 · 제8항

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, 상임이사(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계을리한 경우 기관장,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·요구할 수 있고, 그 공기업·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·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.

#### · 제52조의3제3항

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·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 【자격요건 : 자격기준 중 한 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】

채용예정 분야	자격기준
일반적 행정 9급	<p>1. 학력 기준 : 전문학사 이상</p> <p>2. 업무에 관한 자격 또는 면허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ERP 회계정보관리사, 세무회계, 전산세무회계, 재경관리사, 회계관리</li> </ul> </li> </ul> <p>3. 경험/경력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무원 9급으로 재직한 자</li> <li>-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5급으로 재직한 자</li> <li>- 기타 법인에서 3년 이상 회계 또는 행정사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행정사무, 회계지출 관련 경력(경험)산정 :                동일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(2개 이상의 기관 경력을 합산 해야만 1년 이상 근무 한 경우 불인정)                ※ 정규직 외 기간제로 행정보조 등을 수행한 경우에도 경력인정</li> </ul> </li> </ul>

※ 관련근거 :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인사규정 제16조 ‘별표 1 임직원채용자격기준’, ‘별표 2 자격기준에 있어서 경력 산정방법’

### 3.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

#### ○ 보 수

-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5항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 책정방식 준용(재단 보수규정 제4조)

(단위: 천 원)

기준 직급	상 한 액	하 한 액
일반(행정) 9급	42,995	-

※ 연봉 외 급여(정액급식비, 시간 외 수당 등)는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

- 근무조건 : (재)오송바이오진흥재단 근무규정에 의함

- 채용기간 : 채용일로부터 2년(1년 단위계약)

※ 2년 차 계약 종료 1개월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년보장 여부 결정

## 4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 가. 시험일정

응시원서 접수기간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필기시험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'21. 8. 10.(화) ~ '21. 8. 17.(화)	'21. 8. 19.(목)	'21. 8. 21.(토) 예정	'21. 8. 26.(목) 예정	'21. 8. 30.(월) 예정

### 나. 시험방법

#### 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자격 적격 여부
- 결격 사유 여부

※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 응시자격 부여

#### ○ 2차 시험 : 필기시험 - 인성검사 및 NCS형 직업기초능력평가

※ NCS 형 직업기초능력평가영역 : (5개 영역)

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수리능력, 직업윤리, 대인관계능력

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#### ○ 3차 시험 : 면접시험

※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위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- 직업기초능력, 직무수행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
- 8개의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(총 100점 만점)를 부여하되, 각 요소마다 탁월, 우수, 보통, 부족, 미달로 평정
- 위원의 과반수가 8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부족”으로 평정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달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
#### < 면접시험 평정요소 >

-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1. 의사소통 능력       | 2. 문제해결 능력         | 3. 직업윤리 | 4. 자기개발능력 |
| 5. 객관적 · 분석적 태도  | 6. 종합적 전략적 태도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 7. 규정 및 원칙 준수 태도 | 8. 원활한 소통 및 협조적 자세 |         |           |

#### ○ 합격자 결정

-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을 합격자로 결정
- 최고득점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의 점수가 우선하는 자를 선발

### ※ 가점부여에 관한 특례

(채용규칙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단계별 만점의 10% 내지 5% 가점 부여)

#### ① 전형단계별 만점의 10% 가점 부여
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 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3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
#### ② 전형단계별 만점의 5% 가점 부여

1.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
2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 군인의 자녀
3. 장애인

#### ③ 제1항 각 호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함

## 5. 응시원서접수

- 접수기간 : '21. 8. 10.(화) 09:00 ~ '21. 8. 17.(화) 17:00
-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접수(채용공고 > 지원신청)
- 접수처 : (재)오송바이오진흥재단 홈페이지([www.osong-bio.kr](http://www.osong-bio.kr))  
※ 방문, 우편 접수 불가

## 6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
- 자기소개서(A4 2매 이내) 1부
-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 이력 포함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 1부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(해당자에 한함)
  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근무처 발행분 제출
 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담당업무, 발급 확인자(서명포함)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
  - 해당 근무처의 경력증명서에 위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
  -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내역서(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발급)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
- 최종학력 출입증명서
  - 예) 석사학위 취득자 : 학사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
  - 박사학위 취득자 : 석·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

- 채용자격기준 관련 자격증명서(사본 제출) 1부
  - 직무특성상 필요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(자격증 등, 해당자에 한함) 1부
  -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 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  -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- 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여야 함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는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7. 기타사항
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는 응시 자격요건(관련분야)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증명서류(응시원서, 학위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 제출한 일체 서류)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(재)오송바이오진흥재단 관리부 기획총무팀(043-220-4518)